

심사보고서

교육감기 차지 고3 학교스포츠클럽 축구·농구 대회
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교육감기 차지 고3 학교스포츠클럽 축구·농구 대회 운영
민간위탁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34
----------	-----

2019. 3. 8. (금)
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일자: 2019년 2월 26일

다. 회부일자: 2019년 2월 27일

라. 상정일자: 2019년 3월 8일

(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기획국장 이진영)

가. 제안이유

「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‘교육감기 차지 고3 학교스포츠클럽 축구·농구 대회 운영 민간위탁’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위탁기관: 축구대회와 농구대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법인, 기관, 비영리 단체 기관 등
- 사업대상: 충북 도내 고3 학생
- 위탁범위: 고3 학생 대상 축구·농구대회 운영 전반
- 위탁기간: 위·수탁 계약일로부터 2개월 (2019. 10월~2019. 11월)
- 위탁사업자선정방법: 경쟁 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
- 사업비: 25,000천원(자체예산 100%)
- 위탁주요사무
 - 대회 운영진 및 심판진 섭외·교육·관리 등
 - 경기장 섭외 및 경기장 관리
 - 대회 진행 및 학생 안전 관리
 - 대회 홍보 및 대회 용품 준비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이충환)

-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학수학능력 시험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바람직한 여가선용 및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학교폭력 없는 “친한 친구, 행복한 동행” 실현을 위한 민간 위탁사업임
- 사업기간은 2019.10.~2019.11.이며, 사업대상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총 사업비는 250,000천원임

- 현재 충청북도교육청 내에는 공인 심판 등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하므로, 농구·축구 대회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인, 기관, 비영리 단체 등을 선정하여 대회를 운영 하고자 하는 것임

- 따라서,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고3 학생들의 바람직한 여가 선용과 체력 증진 및 공동체의식 함양,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와 공정한 대회 운영을 위한 사업의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- 교육감기 차지 고3 학교스포츠클럽 축구·농구 대회 운영
민간위탁 동의안

교육감기 차지 고3 학교스포츠클럽 축구 농구대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3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9. 2. 26.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「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‘교육감기 차지 고3 학교스포츠클럽 축구·농구 대회 운영’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위탁기관: 축구대회와 농구대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법인, 기관, 비영리 단체 기관 등
- 사업대상: 충북 도내 고3 학생
- 위탁범위: 고3 학생 대상 축구·농구대회 운영 전반
- 위탁기간 위·수탁 계약일로부터 2개월 (2019. 10월~2019. 11월)
- 위탁사업자선정방법: 경쟁 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
- 사업비: 25,000천원(자체예산 100%)
- 위탁주요사무
 - 대회 운영진 및 심판진 섭외·교육·관리 등
 - 경기장 섭외 및 경기장 관리
 - 대회 진행 및 학생 안전 관리
 - 대회 홍보 및 대회 용품 준비

3. 참고사항

- 위탁현황
 - 2018. 11. / 충청북도축구협회, 충청북도농구협회
- 관계법령
 - 「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- 관련공문
 - 제13회 교육감기 차지 고3 학교스포츠클럽 축구·농구 대회 운영 계획
[충청북도교육청 체육보건안전과-3244(2019.2.13.)]
- 붙임 : 제13회 교육감기 차지 고3 학교스포츠클럽 축구·농구 대회 운영계획

교육의 힘으로
행복한 세상



교육감기 차지
고3 학교스포츠클럽 축구·농구 대회
운영 계획(안)



충청북도교육청
Chungcheongbuk-do Office of Education

체육건강안전과

교육감기 차지 고3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농구 대회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

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

I

목 적

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고3 학생들의 바람직한 여가선용 및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학교폭력 없는 “친한 친구, 행복한 동행” 실현

II

방 침

1. 고3 학생들의 바람직한 여가 선용과 체력 증진 및 공동체의식 함양
2. 일반학생의 참여 기회 확대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관심 제고
3. 의료진 및 구급차 배치를 통한 학생 안전 확보에 최우선 노력

III

대 회 개 요

1. 대 회 명: 교육감기 차지 고3 학교스포츠클럽 축구·농구 대회
2. 대회기간: 2019. 11. 18.(월) ~ 11. 29.(금)(참가팀 수에 따라 변경가능)
3. 대회장소: 종목별 분산 개최
4. 참가대상: 2019학년도 고3 학생
※ 축구: 20명 이내, 농구 15명 이내(중복신청 가능, 학교별 팀 수 제한 없음)
5. 참가자격: 2018. 1. 1. 이후 해당 종목단체에 선수등록이 되지 않은 학생
6. 경기종목: 축구, 농구
7. 주 최: 충청북도교육청
8. 주 관: 종목별 경기단체

IV

대 회 요 강

1. 경기방법

가. 권역별 분리 운영: 제1권역: 청주, 제2권역: 충주, 제3권역: 제천 단양, 제4권역: 진천 음성 괴산 증평, 제5권역: 보은 옥천 영동

나. 예선

- 일시: 2019. 11. 18.(월) 부터 경기 시작
- 장소: 추후 공지(참가팀 수에 따라 결정)
- 경기방식: 전 경기 리그전, 권역별 진행
- 권역별 참가팀 수에 따라 본선진출 팀 확정

다. 결선

- 일시 및 장소: 추후 공지(예선 경기 결과에 따라 결정)
- 경기방식: 토너먼트

2. 심판 및 경기 규칙

가. 심판은 해당 종목 경기단체 공인심판원이 담당

나. 경기규칙(정)은 해당 종목 경기단체의 경기규칙(정)에 따름

다. 모든 팀은 소속 학교별 동일 색, 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

라. 팀 구별이 어렵거나 유니폼이 없을 때는 팀 조끼로 대신함

마. 경기의 승부는 경기 종목별 경기요강에 의하여 결정하되,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경기 종목별 경기규칙에 의거하여 결정

3. 기타사항

가. 대회 참가전 학생 건강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, 학교안전공제회 외에 추가 보상을 희망하는 학교는 개별적으로 상해보험 가입 권장 (부상선수 발생 시 치료 및 보상처리에 관한 대책 마련)

나. 대회주관 경기단체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의료진 및 구급차를 배치하여 안전 후송체계를 유지

다. 본 대회 경기요강은 대회 참가선수 규모 및 경기장 여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음

라. 참가 학생은 필히 신분증(학생증)지참해야 하며, 대회 관계자의 본인 확인 요구 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

마. 경기 전 참가신청서 명단과 출전선수를 확인

- 제출된 참가신청서의 선수 교체는 대회당일 경기 전까지 불참 또는 교체 사유를 명시한 수정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경기장 대회 주최 측에 제출

4. 참가신청 및 대표자 회의

가. 신청마감: 2019. 10. 24.(목) 18:00

나. 신청방법: 추후 확정

다. 대표자회의: 추후 확정

V

시 상 계 획

구 분	시상내용	수여기관장	비고
종목별 1위	상장, 우승기, 트로피, 상품	충청북도교육감	
종목별 2위	상장, 트로피, 상품	〃	
종목별 3위	상장, 트로피, 상품	〃	
최우수선수	상장, 트로피, 상품	〃	
1위팀 지도교사	표창장	〃	추후 확정

VI

소 요 예 산

1. 축구: 15,000,000원

2. 농구: 10,000,000원

- 대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(경기용품, 상품, 심판비, 임차비, 홍보비 등)으로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, 충청북도교육청의 승인을 득하여 실시.
- 사업 목적 외 예산사용을 금하며 시설·설치 확충, 비품성 기구, 기자재 등 자산구입, 기관 관리비 등에 사용을 금함.